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

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

제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7(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)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호의 변경
2. 대표자의 변경
3.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
4.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(저장능력을 포함한다)의 변경

제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8(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요건)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어느 하나를 갖출 것
 - 가. 저장탱크
 - 나. 차량에 고정된 탱크(연료공급차량)

다. 천연가스공급선

2.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

제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9(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) 법 제10조의11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호의 변경
2. 대표자의 변경
3.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
4.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(저장능력을 포함한다)의 변경

제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10(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) ① 법 제10조의11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을 건조한 자
2.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한 자

제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11(증발가스의 처분) ① 법 제10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(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(氣化)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)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

1.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
2.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
3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

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

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12(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) ① 법 제10조의14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폐업·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2.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·가스배관시설·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)	제3조(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)
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①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3. <u>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</u>
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3. <u>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</u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제6조의7(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)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

<신 설>

1. 상호의 변경
2. 대표자의 변경
3.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
4.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(저장능력을 포함한다)의 변경
제6조의8(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요건)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어느 하나를 갖추는 것

가. 저장탱크

나. 차량에 고정된 탱크(연료공급차량)

다. 천연가스공급선

2.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는 것

<신 설>

제6조의9(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) 법 제10조의11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호의 변경

2. 대표자의 변경

3.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

4.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(저장능력을 포함한다)의 변경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의10(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) ① 법 제10조의11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을 건조한 자

2.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한 자

제6조의11(증발가스의 처분) ① 법 제10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(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(氣化)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)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

1.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
2.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
3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

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

<신 설>

여야 한다.

제6조의12(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)

① 법 제10조의14제2항 단서에서 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폐업·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
2.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가스 제조시설·가스배관시설·가스사용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

제23조(보고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23조(보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